

의안번호	2202333
의 퇴 인	조승환의원
회 답 일	2024. 9. 24.
추계번호	24D196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제1항 제2호의2 신설, 제17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및 제28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중장년 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¹⁾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7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및 제28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이 법률안은 조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상세 사유

- 인구감소지역²⁾으로 청년·중장년 등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7조의2 신설, 제28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청년·중장년 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나 향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및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을 신설할 중소기업의 업종과 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지원 비용과 각종 세제 혜택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가 곤란함

2)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참고 1] 인구감소지역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